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2020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99
----------	------

2020년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0. 5. 25.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0. 6. 10.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0. 6. 24.)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0. 6. 26.)
 - 원안의결

II. 제안설명 및 요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체육 소외계층 재능 나눔 사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등의 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감액한 후에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2019 회계연도 결산결과 등에 따라 예치금 10억 3천 5백만 원 증가분을 반영하는 등 당초계획 124억 9천 9백만 원의 8.2% 수준인 10억 3천 5백만 원이 증가한 135억 3천 4백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III.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훈)

1. 주요내용

가. 사업비 감액내역 : 총 4개 세부사업, △330백만원 감액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 세부사업	조정내역		
	당초(A)	변경(B)	증감(B-A)
체육진흥기금(총합)			△33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125
체육 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200	185	△15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601	491	△110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198
생활체육진흥 활성화 시·구 공동협력사업	198	0	△198
행정운영경비			△7
기금관리비	10	3	△7

나.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A)	1차변경(2.20)	2차변경(B)	증감(B-A)
계	12,499	13,534	13,534	1,035
전입금	8,612	8,612	8,612	-
이자수입	1,266	1,266	1,266	-
예치금수회	2,621	3,656	3,656	1,035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초계획(A)	1차변경(2.20)	2차변경(B)	증감(B-A) (증감률)
계	12,499	13,534	13,534	1,035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8,811	8,811	8,686	△125 (△1.4)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3,272	3,272	3,074	△198 (△6.1)
행정운영경비	10	10	3	△7 (△70.0)
일반예산(재무활동)	406	1,441	1,771	1,365 (336.3)

※ 1차 변경사유 : 2019 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예산(재무활동) 중 여유자금 예치금 1,035백만원 증액 (제1차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 2.20)

2. 검토의견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수입계획 중 예치금회수(10억 3,500만원)와 지출계획중 예치금(10억 3,500만원)에 기반영하고,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등 3개 정책사업에서 △ 3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지출계획중 예탁금으로 증액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관련 법령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당초 지출계획보다 △70% 감액하여 지출계획한 것이며, 일반예산(재무활동)은 당초(4억 600만원)보다 336.3%, 13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예치금(예치금 회수)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지난 2월, 관련 위원회가 '1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여유자금(10억 3,500만원)을 '20년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 항목으로 증액하고, 이와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예치금(10억 3,500만원)도 증액하는 것으로 심의한 바 있으나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등 3개 정책사업은 당초 지출계획을 감액하는 것으로 안전 제출에 앞서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나 의안이 접수된 지난 5월 25일까지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안전제출 이후 서면심의 한 것으로 확인됨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련 기준에 따라 자동 반영된 예치금 10억 3,500만원을 증액하고, 3개 정책사업에서 감액한 재원을 예탁금(3억 3,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 동 기금 관련 조례는 타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서울시의 타 조례도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을 경우 재정투융자기금에 통합관리 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등의 3개 정책사업은 지출계획중 감액 계획하는 것임에도 감액되는 세부사업과 사업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부대의결 : 「생략」

VII. 심사결과 : 원안의결(2020. 6. 26.)

2020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1599
----------	------

제출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우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체육진흥기금 사업비를 감액하고 이를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경제 지원대책 추진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 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비 감액내역 : 총 4개 세부사업, 330백만원 감액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 세부사업	조정내역		
	당초(A)	변경(B)	증감(B-A)
체육진흥기금(총합)			△33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125
체육 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200	185	△15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601	491	△110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198
생활체육진흥 활성화 시·구 공동협력사업	198	0	△198
행정운영경비			△7
기금관리비	10	3	△7

나.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 (A)	1차변경 (2.20.)	2차변경 (B)	증감 (B-A)
계	12,499	13,534	13,534	1,035
전입금	8,612	8,612	8,612	-
이자수입	1,266	1,266	1,266	-
예치금수회	2,621	3,656	3,656	1,035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 (A)	1차변경 (2.20.)	2차변경 (B)	증감(B-A) (증감률)
계	12,499	13,534	13,534	1,035
시민체육 및 국체스포츠 진흥발전	8,811	8,811	8,686	△125 (△1.4%)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3,272	3,272	3,074	△198 (△6.1%)
행정운영경비	10	10	3	△7 (△70.0%)
일반예산 (재무활동)	406	1,441	1,771	1,365 (336.3%)

※ 1차 변경사유 : 2019 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예산(재무활동) 중 여유자금 예치금 1,035백만원 증액 (제1차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2.2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체육정책과 체육정책팀 김보민(☎ 2133-2682)